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66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정진욱·정동영·장종태

안도걸 • 이기헌 • 한정애

권향엽 · 허성무 · 박해철

이상식 · 양부남 · 이개호

이재관 · 조인철 · 박희승

오세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심의 주체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 심의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47조의2).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이를"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등"을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를 "그 밖에 전력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의 작성·보관·관리 등에"로 한다.

- 이 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10명 이 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 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	
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u>이를</u> 확정한다. 다	<u>국회 소관 상임위</u>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	원회 동의를 받아 이를
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	
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	
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기본</u>	⑤ <u>제2</u>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 ⑨ (생 략) 치 등) ①・② (생 략)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포함되어야----. <후단 삭제>

(6) ~ (9)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 지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

-----. <u>이</u>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포함하 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 소 · 토의내용 · 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 록된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 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 령으로 정한다.

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⑥ 그 밖에 전력정책심의회의 <u>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구성 및 운영, 회의록의 작성·</u> <u>보관·관리 등에</u>-----